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



구 미 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

의안번호	제 호
의결년월일	

제출년월일 : 2014. 11.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채미정 주변정비사업

구미가 배출한 야은 길재선생의 정신문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하고 의의를 계승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추진한 채미정주변 정비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상정함.

2. 주요내용

【취득재산】

< 당 초 >

- 토 지 : 57,474m² (남통동 248번지 외 6필지)
- 건 물 : 1,628m² (서원 등 12개동)
- 기 준 가 격 : 10,579,873천원

< 변 경 >

- 토 지 : 2,197m²(남통동 산33필지 외 4필지)
※ 3필지 931m²는 시유지
- 건 물 : 401.06m²(수양각 외 3건)
- 기 준 가 격 : 3,393,396천원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illegible]

2014년도 관리계획 재산목록(취득)(수시-4차)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 원)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 매각 시기	사 유	재산소유자 주소 · 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취득	당 초	소계	10건	59,102	10,579,873			
		토 지 (전)	남통동 248	1,005	35,426	2016년	채미정주변정비 사업	해평길씨 율리종파중증
		토 지 (임)	남통동 산27-1	2,182	30,002	"	"	"
		토 지 (임)	남통동 산25	8,375	115,156	"	"	기부 채납
		토 지 (임)	남통동 산25-5	1,192	16,390	"	"	"
		토 지 (임)	남통동 산26	14,550	200,062	"	"	"
		토 지 (임)	남통동 산27-2	10,116	139,095	"	"	"
		토 지 (임)	남통동 산28-1	20,054	275,742	"	"	선산김씨 문간종파중증
		건 물	야은서원	516	3,096,000	"	"	구미시 공사 금액 기준
		건 물	교육관 및 생활관	859	5,154,000	"	"	"
		건 물	야은전시관	253	1,518,000	"	"	"
	변 경	소계	9건	2,598.06	3,393,396			
		토 지 (임)	남통동 산33	610	7,930	2015년	채미정주변정 비사업	국(산림청)
		토 지 (전)	남통동 산144	656	8,528	"	"	국(국토교통 부)
		토 지 (답)	남통동 283-2	220	16,500		"	구미시
		토 지 (답)	남통동 283-4	151	11,325		"	"
		토 지 (임)	남통동 산24-16	560	7,280		"	"
		건 물	수양각	256.38	3,341,833	2015년	"	공사 금액 기준
		건 물	훈자실	64.63		"	"	"
		건 물	영상실	64.63		"	"	"
		건 물	출입문	15.42		"	"	"

취 득 대 상 재 산 현 황

□ 재산표시

· 소 재 지 : 남통동 산33번지 외 4필지 (2,197㎡)

□ 위치도



□ 지적도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 5. <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 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시장은 다음 연도 예산을 시의회에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